

2.4. 박사후과정연구원임용에관한운영세칙

제정 2006.8.3

제1차 개정 2007. 10. 23

제2차 개정 2020.09.01

제 1조 (목적) 이 세칙은 서울대학교 BK21 FOUR 미래수의학선도교육연구단규정에 의거 박사후과정연구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자격)

- ① 박사학위 소지자나 임용시점까지 취득 가능한 자로 한다.
- ② 연수연구원은 전일제로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.

제 3조 (구비서류)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 단 추가적인 구비서류는 공개채용 공고문에 명시한다.

- ① 박사후과정연구원 지원 최소기준: 최근 5년간 SCI(E)논문 주저자 5편 or 주저자 IF 총합 20점 이상
- ② 공개지원서
- ③ 연구실적물 목록(증빙서류 SCI급 논문 첫 페이지 1부, 연구실적물 엑셀파일 목록)
- ④ 최종학력증명서(졸업증명서) 1부
- ⑤ 연구계획서 각 1부

제 4조 (선정절차) 박사후과정연구원은 연구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제 5조 (선정 및 배정 기준)

- ①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
- ② 일차적으로 지원자의 업적을 고려하되, 필요한 경우 지원분야 및 활용 교수의 업적도 고려하여 선정한다.
 - * 배점: 지원자실적 60%, 활용교수 전년도 기여도 30%, 연구단장 평가 10%
 - * 최상위 실적을 기준으로 상대 평가
- ③ 배정은 참여 교수 1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6조 (계약기간)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, 1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.

제 7조 (자격의 말소)

- ① 타 직장에 취업하였을 경우에는 발생 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즉시 자격을 말소한다.

- ② 자격의 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잔여 인건비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8 조 (기타사항)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‘4단계두뇌한국(BK)21사업관리운영지침’ 및 인센티브관련운영세칙에 따르며, ‘서울대학교연구원임용규정’과 ‘서울대학교연수연구원규정’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이 세칙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(2006.8.3)로부터 시행한다.
2. 이 세칙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(2007.10.23)로부터 시행한다.